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1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8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대한민국
	4. 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강경필, 송채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518508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0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5. 26. 접수제949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6. 25. 접수 제11384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주시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7. 7. 17. 접수제9605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원고에게 2008.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추가 증거(갑 제17호증) 및 변론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0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순교

판사 전서영

판사 양형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0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H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적벽돌조평슬래브지붕

4층다세대주택

1층 102.91㎡

2층 105.34㎡

3층 105.34㎡

4층 98.41㎡

옥탑 13.9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I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49.46㎡

대지권의 표시

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동두천시 J 대 594㎡

2.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3.대지권의 비율 : 594분의 31.18

(이상 B 소유,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관할) 끝.